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6월 10일, 부승찬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6.3.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써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

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실제 현장에서 상비예비군으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만,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으로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제74조의5 등의 내용 추가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동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바,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에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내용 추가)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상근 예비군은 이 법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 [붙임] 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동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바,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에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의 개정)’을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5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③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정안과 같음)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u><신 설></u>	②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5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u><신 설></u>	③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목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상비예비군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 제목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를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하고, 같은 조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상근 예비군은 이 법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비예비군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 중 “비상근 예비군”을 각각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4조의5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u>비상근 예비군 제도</u>)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 <u>비상근 예비군</u> ”이라 한다) 제 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3(<u>상비예비군 제도</u>) ① -- ----- ----- “ <u>상비예비군</u> ”----- -----.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 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 아 <u>비상근 예비군</u> 을 선발한다.	② ----- ----- ----- -- <u>상비예비군</u> -----.
③ 그 밖에 <u>비상근 예비군</u> 의 정 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 <u>상비예비군</u> ----- ----- ----- -----.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 정법률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 정법률
제10조의3(<u>비상근 예비군</u> 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u>비상근 예비군</u> 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 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3(<u>상비예비군</u> 의 휴무 등 처리) ----- ----- --- <u>상비예비군</u> ----- ----- ----- -----.